

Q&A 1 신고 대상

Q 여타 법(가축분뇨법, 농지법, 건축법 등) 위반 농가 및 사업장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?

Q 개식용종식법 제10조에 따르면 여타 법 위반 여부와 상관 없이 현재 영업 중인 개식용 업체는 모두 신고 대상

Q 소규모 식용 개 사육 농가도 신고 대상인지?

Q 개식용종식법 제10조에 따르면 사육 규모와 무관하게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영업 중인 식용 개 사육 농장은 모두 신고 대상임

Q 사업장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 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는지?

Q 본인 소유, 임차 여부와 상관없이 업계 종사자이면 신고 대상에 해당

Q 신고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모두 지원 대상인지?

Q 추후 마련될 시행령, 고시 등을 통해 지원기준이 정해지는 바에 따라 일부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자는 전폐업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



Q&A 2 신고 내용 및 절차

Q 사육마릿수 산정 기준은?

Q 식용 목적 축종인 도사견(출하체중 50~60kg 내외) 및 믹스견(출하체중 15~20kg 내외)을 포함하며, 성견이 아닌 개체도 모두 포함 대상

Q 현재 사육마릿수는 신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며, 연평균 사육 마릿수는 최근 3년 평균(21~23년)으로 산정

*연평균 사육마릿수는 농가 구두담변 및 서류확인(농장 보유 출하영수증, 거래장부, 가축분뇨시설 신고서, 경영체등록자료 등)을 통해 확인

Q 실사육면적(케이지·평사)의 정확한 의미는?

Q 실사육면적은 농장에서 실제 가축 사육에 활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의미
- 농가가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시설 신고 시 사육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산정

*보통 육견 농가의 경우 사육 케이지의 개당 면적×케이지의 개수 등으로 산정

Q 신고서 제출 내용은 어떻게 증빙 혹은 확인하는지?

Q 농장 및 영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출하 영수증, 거래장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서·경영체 등록자료 등 제출 내용에 대해 증빙 가능한 모든 서류, 기록 등을 운영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
- 운영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지 못한 증빙자료는 신고서 수리 전 현장조사를 통해 농장 및 영업장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

개식용종식법 관련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

작성 가이드라인, Q&A 관련 사항은
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(<https://www.mafra.go.kr>)에
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Q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

제출 기간
(신고) '24.2.6. ~ 5.7.
(이행계획서) '24.2.6 ~ 8.5.

신청 대상자 및 제출처

제출 대상

-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, 개식용 도축·유통상인*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**
 - * (도축·유통상인)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·처리하거나,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·판매하는 자
 - ** (개식용 식품접객업자)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·가공하여 판매하는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는 자
- 다만, 개식용종식법 제9조에 따라 법 공포일('24.2.6) 이후 신규 운영한 개식용 업계는 신고 대상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됨

접수처

-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특별자치시청·시청·군청·구청,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제출



신고

신고 절차

작성 및 제출(신고인)

서류·현장조사(시군구)

신고확인증 발급

*신고 내용 검토를 위해 농장 및 영업장 현장 조사 일자를 신고 처리 기간(10일) 중으로 협의해야 하며, 시군구 담당자 방문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.

증빙자료 제출 안내

(신고) 「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운영신고서(별지 제1호~제3호 서식), 신고 내용별 증빙자료*
 *예시 이외에 거래 장부 등 신고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, 서류, 기록 최대한 제출

증빙자료 예시

공통	신분증, 사업자등록증(유사업종), 세금계산서, 간이영수증, 임대차계약서 등		
개사육농장	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서·증명서(가축분뇨법)	도축유통상인	도축·유통 거래내역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
	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·확인서(농어업경영체법)	식품접객업	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에 따른 영업신고증 사본 그 밖에 개고기 구입량 및 판매량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
	폐기물처리업 신청서, 폐기물 위탁재활용(운반) 계약서(폐기물관리법)		
	그 밖에 사육마릿수, 사육면적 등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		

이행계획서 제출

이행계획서 제출 절차

작성 및 제출(신고인)

검토 및 수리(시군구)

이행 점검(시군구)

작성 서류

- 「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(별지 제5호 서식)

작성 기준

폐업예정일

'27.2.6. 이내로 폐업 필요(개식용종식법 제5조)

이행조치 계획사항

폐업과 전업에 관한 이행조치 상세 명시

- (사육견 종식 계획) 현재 사육 중인 개의 처리 계획(유통 등), 개의 증입식 중단(암수 분리, 중성화 등) 등 구체적으로 명시(개사육농장만 해당)
- (시설물 철거 등 폐업 계획) 개 식용 관련 시설물별 철거 기간 및 계획 등 폐업에 필요한 이행조치 구체적으로 명시
- (전업 계획) 전업 희망 업종 및 내용, 예상 전업 시기 등(전업 희망시)

*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령 공포('24.8 예정) 후 6개월 이내에 수정, 보완하여 제출 가능